

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
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
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년 1월 10일, 경상북도교육감

나. 회부일자: 2025년 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5년 2월 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박성일

나. 제안이유

○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, 「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폐지된 기관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등급 상향 조정(초 3교)
 - 안동 길안초등학교길송분교장(벽지 다 ⇒ 벽지 나)
 - 안동 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장(벽지 다 ⇒ 벽지 나)
 - 울진 삼근초등학교(벽지 라 ⇒ 벽지 다)
- 벽지 기관 신규 지정(4개 기관)
 -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(벽지 가)
 - 경상북도교육청 김천오토캠핑장(벽지 다)
 -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(벽지 라)
 -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Wee센터(벽지 라)
- 폐지 기관 삭제(1개 기관)
 - 경상북도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(벽지 라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기태)

가. 제안취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, 「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예에 따라 폐지된 기관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본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중 “안동 길안초등학교길송분교장” 및 “안동 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장” 을 “벽지 다” 에서 “벽지 나” 로, “울진 삼근초등학교” 를 “벽지 라” 에서

“벽지 다” 로 벽지 등급 상향 조정함.

- 그리고 “경상북도교육청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” 을 “벽지가” 로, “경상북도교육청 김천오토캠핑장” 을 “벽지 다” 로 “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” 및 “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Wee센터” 를 “벽지 라” 로 벽지 신규 지정하며, “경상북도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” 을 벽지 기관 폐지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와 「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폐지된 기관을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-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5조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의거한, 2023년도 인사혁신처 주관 특수지(도서·벽지)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반영함.

- 벽지 3개 초등학교에 대해 등급 상향 조정

지역	학교(기관)명	현행 등급	개정 등급
안동	길안초등학교실송분교장	다	나
안동	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장	다	나
울진	삼근초등학교	라	다

- 벽지 1개 기관에 대해 신규 지정

지역	학교(기관)명	신규 등급	비고
울진	울진교육지원청Wee센터	라	구) 울진학생수련원(20. 6. 30. 폐원)

- 그리고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의거한,

도교육청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반영함.

- 벽지 3개 기관에 대해 신규 지정

지역	학교(기관)명	신규 등급	비고
포항	포항산누리오토크мп장	가	구) 포항학생야영장
김천	김천오토캠핑장	다	구) 대덕중증산분교장
의성	의성안전체험관	라	구) 의성학생야영장

○ 또한, 2020. 4. 24.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「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2020. 5. 7. 원안가결됨에 따라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반영함.

- 폐지 기관 삭제: 울진학생수련원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, 인사혁신처 정기 실태조사, 도교육청 자체 실태조사 및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
○ 다만, 삼근초등학교옥방분교장 및 삼근초등학교의 경우 2015. 4. 21.자로 금강송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, 울진학생수련원의 경우 2020. 5. 7.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사유 발생 시점에 검토하여 적기에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